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90 발의연월일: 2024. 11. 19.

발 의 자:오세희・박지원・박수현

김영환 • 박희승 • 백승아

정진욱 • 이병진 • 이광희

정동영 · 김한규 · 문금주

김주영 · 허성무 · 전진숙

김남근 · 김 윤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은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추천한 업종·품목에 대해서도 대기업 등이 그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 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신설).

법률 제 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생계형 적합업종의"를 "제7조제2항에 따라 동반성장위 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추천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추천한 업종·품목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제2항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① | 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① |
| 대기업등은 <u>생계형 적합업종의</u> | <u>제</u> 7조제2항에 따 |
|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 | 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
| 해서는 아니 된다. |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추 |
| | 천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 |
| | 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생계 |
| | 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
| | |
| | |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제17조(과태료) <u><신 설></u> | 제17조(과태료) ① 제8조제1항을 |
| | 위반하여 동반성장위원회가 생 |
| | 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 |
| | 을 추천한 업종·품목의 사업 |
| | 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 |
| | 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를 부과한다. |
| ① (생 략) | <u>②</u> (현행 제1항과 같음) |
| <u>②</u> <u>제1항</u> 에 따른 과태료는 대 | <u>③</u> 제1항 및 제2항 |
|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 | |
| 징수한다. | |